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 공고기간 : 2026. 6. 4. ~ 2026. 6. 19.(15일간)
- 대 상 자 : 김*원 등 13명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발급기간	세대주
1	김*원	2009.04.02.	미래로 350	2026.05.01.~2027.04.30.	박*정
2	김*	2009.04.05.	미래로 345	2026.05.01.~2027.04.30.	신*경
3	송*양	2009.04.28.	미래로 350	2026.05.01.~2027.04.30.	조*혜
4	김*은	2009.04.21.	동패로 117	2026.05.01.~2027.04.30.	김*수
5	정*은	2009.04.27.	미래로 345	2026.05.01.~2027.04.30.	정*훈
6	백*우	2009.04.17.	교하로307번길 5-20	2026.05.01.~2027.04.30.	백*선
7	성*연	2009.04.16.	동패로 117	2026.05.01.~2027.04.30.	조*영
8	이*유	2009.04.14.	동패로 34	2026.05.01.~2027.04.30.	이*현
9	이*현	2009.04.03.	와석순환로 61	2026.05.01.~2027.04.30.	최*순
10	이*우	2009.04.24.	한빛로 11	2026.05.01.~2027.04.30.	남*현
11	조*지	2009.04.22.	한빛로 20	2026.05.01.~2027.04.30.	조*호
12	최*인	2009.04.14.	동패로 100	2026.05.01.~2027.04.30.	송*경
13	김*란	2009.04.04.	미래로310번길 70-15	2026.05.01.~2027.04.30.	임*주

상기자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자로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일 안에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2026. 6. 4.

운 정 3 동 장

